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개인정보침해요인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중소벤처기업부 등 19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3. ~ 4. 3., 3. 29. ~ 4. 3.) 결과, 특

기할 사항 없음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조제2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의3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

다.

제3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본을”을 “그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4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증명”으로,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⑪ 인사혁신처장, 소속 장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인사혁신처장: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업무

2. 소속 장관: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인사관리 업무

3. 교육훈련기관의 장: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교육훈련 업무

제6조(「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임용에 관한 사무”를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로 한다.

제8조(「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2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3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제2호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제14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

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로, “사업자등록증의”를 “사업자등록증명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이하 같습니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관련 서류”를 “그 서류”로 한다.

제15조(「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6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이하 같습니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관련 서류”를 “그 서류”로 한다.

제17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로 한다.

제18조(「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성명”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0조(「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명의”를 “제2호에 따른 서류의”로, “사업자등록증명원을”을 “그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21조(「소청절차규정」의 개정)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24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의 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

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25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6조의3제4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26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27조(「자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 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2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본을”을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관련 서류”를 “그 서류”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며, 이하 같습니다)

제29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이름”을 “그 서류를”로 한다.

제30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3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명의”를 “제2호에 따른 서류의”로, “사업자등록증명을”을 “그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32조(「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그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제33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34조(「행정사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법 제5조·제6조·제8조·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사의 자

격 및 시험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이내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기업 소재지	전화번호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이룬 산업융합의 성과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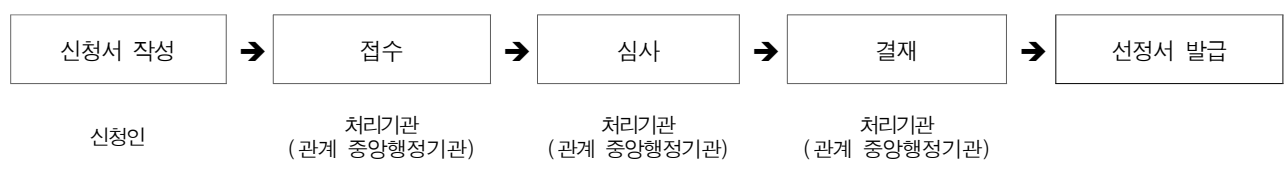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② (생략)	제5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 ----- ----- ----- <u>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조제2항에서 같다)</u> ----- --. ----- <u>사업자등록증명</u>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② (생략)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 ----- ----- ----- <u>사업자등록증명</u> -----

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u>사업자등록증</u>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 ----- <u>사업자등록증</u>-----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기술개발 지원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사업자등록증</u>-----. ----- <u>사업자등록증</u>-----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3(예방접종 휴가 비용지 원 절차) ①·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사업자등</u> <u>등록증</u>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 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 록 해야 한다. ④·⑤ (생 략)	제21조의3(예방접종 휴가 비용지 원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사업자등</u> <u>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u> <u>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u> <u>다. 이하 같다)</u>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② (생 략)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 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 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 -----

다.

④ · ⑤ (생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u>사본을</u>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사업자등록증</u> ③ ~ ⑤ (생략)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그 서류를</u> ----- -----.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명</u> ③ ~ ⑤ (현행과 같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② (생략)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u>사업자등록증</u>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u>해당 서류의 사본</u> 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 ----- ----- ----- ----- ----- ----- ----- ----- ----- ----- <u>. 사업자등록증명</u> ----- ----- ----- ----- ----- ----- ----- <u>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u> 를 -----.
1. <u>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u>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u>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① ~ ⑩ (생략) ⑪ 인사혁신처장, 소속 장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추천·선발,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인사혁신처장, 소속 장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인사혁신처장: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업무 2. 소속 장관: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인사관리 업무 3. 교육훈련기관의 장: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교육훈련 업무
⑫ (생략)	⑫ (현행과 같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 ④ (생략) ⑤ <u>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⑥ (생략) <u><신설></u>	⑥ (현행과 같음) <u>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시험 및 채용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법 제7조에 따 른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직원의 <u>임용에 관한 사무</u> 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 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4호 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 ----- ----- ---- <u>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u> <u>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u>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절차 등) ① ~ ④ (생략)	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 ----- ----- ----- ----- ----- .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u>사업자등록증</u>	2. ----- ----- <u>사업자등록증명</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 ⑦ (생략)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u>다만, 제2호 서류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u> 1. (생략)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u>사업자등록증</u> 3. (생략) ⑨ ~ ⑫ (생략)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u>.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u> 1. (현행과 같음) 2. ----- <u>사업자등록증명</u> 3. (현행과 같음) ⑨ ~ ⑫ (현행과 같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소방청장,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u>건강에 관한 정보</u> ,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 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 ----- ----- <u>건강에 관한 정보(제6호부터 제8호까지 의 사무로 한정한다)</u> -----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6(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10조의9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카드데이터 제공요청서에 교통카드데이터의 이용 목적 및 용도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요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u>사업자등록증</u> (요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6(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① ----- ----- ----- ----- ----- ----- -----. ----- ----- ----- ----- ----- <u>사업자 등록증명</u> -----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u>사업자등록증의 내용</u> 을 확인하여야 한다. <u>다만, 신고인이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u> ④ (생략)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u> ----- <u>.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u>사업자등록증의</u>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사업자등록증명</u>

<u>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단서 신설></u>	----- . <u>다만, 신 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u>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생략)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u>제2호에 따른 서류</u>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u>	2. <u>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 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기준 등)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u>사업자등록증</u>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기준 등) ① ----- ----- ----- ----- ----- ----- ----- ----- ----- ----- ----- ----- <u>사업자등록증</u>(해당 <u>사업자등록증</u>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 <u>사업자등록증</u>의 -----.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

-----.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u>사업자등록증</u>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 <u>사업자등록증</u>----- -- <u>사업자등록증명</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u>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u>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u>사업자등록증</u> 2. (생략)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서류</u> ----- ----- ----- ---. 1. ----- ----- ----- ----- <u>사업자등록증명</u> 2. (현행과 같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① (생략)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u>사본</u> 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u>사업자등록증</u> (해당 <u>사업자등록증</u> 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 <u>사업자등록증</u> ----- ----- <u>서류</u> 를-----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 ----- ----- -----. 1. ~ 5. (현행과 같음)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① (생략)	제26조(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u>사본</u> 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u> (<u>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u>) 및 <u>사업자등록증명</u> (<u>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 ----. ----- <u>사업자등록증명</u> ----- ----- <u>서류</u> 를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내에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및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대리인의 등기) ① ----- ----- ----- ----- ----- -----.
1. 대리인의 <u>성명·주민등록번호</u> 및 주소	1. ----- <u>성명</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u>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u> ,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	제5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 ----- ----- ----- -- <u>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u>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

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다.

1. ~ 8. (생략)

② (생략)

③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7. (생략)

④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로 한정한다)-----

-----.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

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④ -----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u>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u>, 같은 영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⑤ (생략)	----- -- <u>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u>-- ----- ----- ----- -----. 1.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명의</u>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u>사업자등록증명원을</u>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생략) 2. <u>사업자등록증명</u> ④ ~ ⑥ (생략)	제20조(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제2호에 따른 서류의 ----- ----- 그 서류를 ----- -----.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 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 번호는 제외한다)</u> ④ ~ ⑥ (현행과 같음)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탈퇴, <u>건강에 관한 정보</u>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u>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u> 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u>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u> ----- <u>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 ⑦ (생략)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 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서 류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 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다만, 신청인이 <u>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 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u>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u>사업 자등록증</u>	2. ----- <u>사업 자등록증명</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⑨ ~ ⑫ (생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사업자등록증</u> 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생략)	제6조(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사업자등록증명</u> (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 <u>사업자등록증명</u> ----- -----.
제1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사업자등록증</u> 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제1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 ----- <u>사업자등록증명</u> -----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 ⑤ (생 략)	----- -----. ④ · ⑤ (현행과 같음)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략)	제34조의2(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u>사본</u> 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 ----- ----- ----- ----- <u>사업자등록증</u> (해당 <u>사업자등록증</u> 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 <u>사업자등록증</u> ----- ----- <u>서류</u> 를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②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u>사본</u> 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u>서류</u> ----- -----.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 ③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u>사업자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u>사업자등록</u>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 <u>사업자등록</u>

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 ③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증명-----
----- 서류를 -----
-----.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 사업자등록증명-----
----- 서류를 -----
-----.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업자등록증명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u>사업자등록증</u>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u>사본</u>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u>사업자등록증명</u>----- ----- <u>서</u> <u>류를</u> -----.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분할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u>사업자등록증</u>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u>사업자등록증</u>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u>사본</u>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u>사업자등록증명</u>----- -----. ----- <u>사업자등록증명</u>----- ----- <u>서류를</u>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관청(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u>건강에 관한 정보</u>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u>제3호</u>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u>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u> ----- <u>제4호</u>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u>	<u><삭제></u>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① (생략)	제25조(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u>사업자등 등록증</u>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u> 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u>사업자등 등록증</u> (해당 <u>사업자등록증</u> 에 <u>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 -----. ----- <u>사업자등록증</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① (생략)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u>사본</u> 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u>서류</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u>	2. <u>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 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u>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u> <단서 신설>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u>
④ ~ ⑨ (생략)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u>사업자등</u>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사업자등</u>

<u>록증</u>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u>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u>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이를</u>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u>록증명</u>----- . ----- <u>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u> <u>록증명</u>----- <u>그 서류를</u>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② (생략)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u>사업자등록증명</u>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u>사본</u> 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 ----- ----- ----- <u>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u> ----- ----- ----- <u>서류</u>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u>사업자등록증명</u> 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u>사업자등록증명</u> 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생략) 2. <u>사업자등록증명</u> ④·⑤ (생략)	제10조(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제2호에 따른 서류의 ----- ----- <u>그 서류를</u> ----- -----.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 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u> ④·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제15조(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u>사본</u>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 4. (생략) ③ ~ ⑦ (생략)	----- ----- ----- ----- ----- <u>서류</u>를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① (생략)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 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 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u>해당 서류의 사 본을</u>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u>그 서류를</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u>	2. <u>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 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 번호는 제외한다)</u>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생략)	제6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u>해당 서류의 사본을</u>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 ----- <u>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u> 를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인 경우에는 <u>사업자등록증</u>	2. ----- <u>사업자등록증명</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u>이 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u>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u>다음 각 호의 사무</u> ----- ----- ----- ----- ----- -----.
<u>1. 시험의 시행</u>	<u>1. 법 제5조·제6조·제8조·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사의 자격 및 시험에 관한 사무</u>
<u>2. 시험 합격자의 관리</u>	<u>2.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u>
<u>3. 행정사 자격증의 발급 및 관리</u>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복권총괄과	
연 락 처	(044) 215 - 7811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3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4464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1482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연 락 처	(044) 202 - 573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225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5543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4817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연 락 처	(044) 200 - 586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4 - 7358

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8139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7447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5058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3) 719 - 7127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연 락 처	(02) 2110 - 1526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연 락 처	(044) 200 - 7712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2) 2100 - 2804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연 락 처	(02) 397 - 7347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연 락 처	(02) 2202 - 8611